

1. 개정 이유

지하시설물의 범위에 고압가스배관, 유해화학물질배관, 위험물 제조소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094호, 2024. 1. 2. 공포, 공포즉시 시행)됨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또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지하 안전평가서 등의 보존기간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추가 (안 별표3제1호 파, 하, 거)

- 영 제2조 제14호, 제15호, 제16호에 추가된 고압가스배관,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등을 시행규칙 별표3에 추가 반영

나. 지하안전평가서 보존기간에 대한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안 제25조)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결과 반영

3. 주요 토의 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규제의 재검토기한 정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3에 제1호 과목부터 거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영 제2조제14호의 고압가스배관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고압가스배관

하. 영 제2조제15호의 제조소등

거. 영 제2조제16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중 직격 500밀리
미터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 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 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 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서등의 보존기간 등	<삭 제>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